

[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-18호]

# 2026년도 「장비 활용 지원사업」 기업 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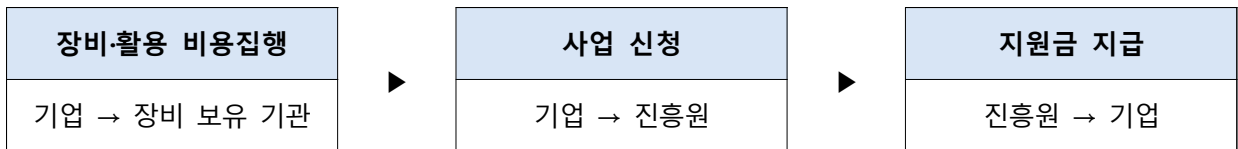
(재)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·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「장비 활용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6일

(재)평택산업진흥원장

## 0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도 「장비 활용 지원사업」
- 사업기간 : 2026. 1. 1.(목) ~ 2026. 10. 30.(금) / 예산소진시 종료
- 주요내용 :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
- 사업절차



## 0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총 5개사 내외 / 최대 20,000천원 이내(※ 기업부담금 별도)

구분	지원분야	지원한도(기업당)	지원규모	지원금(%)	기업부담금(%)
장비 활용	장비 사용료	4,000천원 이내	5개사 내외	80%	20%

- ※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
- ※ 지원금 및 지원기업 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 변동될 수 있음

- 지원방식 :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(서류 검토·승인 후 지급)
- 지원비율 : 소요비용 한도 내 80%를 지원하며 나머지 20%는 기업 자부담
-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

### □ 사업비 편성

- 총 사업비(100%) = 지원금(80%) + 기업부담금(20%)
- 사업비 편성 예시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 사업비(100%)	지원금(80%)	기업부담금(20%)
장비 활용	5,000	4,000	1,000

※ 부가세 및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(지원금 산정 제외)

### □ 지원내용

- 당해연도(2026년) 연구장비 활용 및 사용료 납부(정산)완료 기업 대상 지원
  - ※ 단, 사업기간 이내 활용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
-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,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·연구기관·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
-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(ZEUS, i-Tube)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 수수료
- 장비 사용 기관과 장비명을 신청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, 등록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, 해당 기관 장비담당자의 서명 필수
- 활용 목적에 따른 지원 가능 범위 : 초도양산, 시험생산, 개발·시제품 제작
  - ※ 동일 품목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, 일반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
- 기업 선(先) 이용 및 정산 후(後) 지원(기업당 연 1회 신청 가능)

## 03 지원대상 및 조건

### □ 지원대상 :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

-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,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
  - ※ 본사, 연구소,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,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
-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의한 중소기업

### □ 지원조건

-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

- 모든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
- 지원금 산정은 지원비율에 따르며,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

□ 지원 제외사항

- 제조 품질관리(QC),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, 제품 생산 등의 경우
- 중견기업·대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
-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
  - ※ 지원 이후에도 중복·부정 지급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
- 공고 마감일 기준, 국세·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 기업(완납 시 신청 가능)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- 제출 서류 미비(누락/허위), 마감기한 이후 접수, 검토·보완 요청 미이행
-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·송금 수수료 등 지원 불가
-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(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제출)
-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(프리랜서 등)과의 거래 비용 인정 불가
- 기타 진흥원 및 평가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※ 예) 신청 과제의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, 신청 자격 미달

**04 선정방법**

□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후 선정

-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적정성, 자격요건, 누락사항 등을 사업담당자가 검토
- 지원금은 사용료 납부 및 증빙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
- 선착순은 필수서류 적정 제출 완료 기준이며,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순에서 제외 또는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
-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추가 모집 또는 예비 순위자는 접수순으로 선정됨

## 05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2026. 3. 6.(금) ~ 2026. 10. 30.(금) / 예산 소진시 종료

□ 신청방법 : 기업지원사업신청(pipabiz.or.kr/icu) 사이트 온라인 접수

- 공고문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파일 업로드
- 온라인 접수 외 방문·메일·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

□ 문의처 : 기업지원팀(031-8029-9121 / khs@pipabiz.or.kr)

### □ 제출서류

- 아래 서류를 각각 PDF로 변환 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, 1개의 압축파일 (신청기업명.zip)로 제출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사업신청서	서식1
2	장비 활용 결과보고서	서식2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서식3
4	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	서식4
5	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	신청기업 및 장비활용 주관기관
6	법인등기부등본	유효사항만 제출
7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원본 대조필 날인 / (국세) 국세청 홈택스, (지방세) 정부24
8	중소기업 확인서	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)
9	장비사용 결과물	분석 결과보고서/ 성적서, 시제품 사진 등
10	기업(법인) 통장 사본	-
11	지원금 지출 증빙	서식5 수수료 납부 영수증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
12	기타 증빙서류	해당시

- 서류는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, 누락 시 접수(평가)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예산 소진 및 마감기한 이후 제출 시 접수 불가
-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
-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  - ※ 필요한 경우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
## 06 유의사항

-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(담당자 이메일, 구두 공지사항)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당해 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하며, 다른 제품(아이템, 과제 등)으로는 지원이 가능함
- 전년도 동일사업의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음. 다만, 단계별·후속적으로 추진되는 연속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-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동일 건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또는 협약기간 내 지원대상·조건 상실 및 사업 수행 중·완료 후 지원자격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비용은 환수될 수 있음
- 기업 수요,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-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하며,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
-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
-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·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
  - ※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,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##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

업종	품목코드	해당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9中	일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,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 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*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 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## 붙임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

구 분	제재 및 환수 사유	제재 및 환수기준	
		참여제한	지원금 환수
부정수급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·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(중복수혜)	5년	전액 환수
중단 · 실패	<input type="checkbox"/>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, 실패한 경우	3년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중단,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(사망 등)	면제	집행잔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기업(위탁기관) 부도·폐업으로 중단, 실패한 경우 (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)	1년	집행잔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	1년 면제	전액 환수
포기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○ 관련 증빙 제출 필요	면제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	1년	전액 환수
사업비 집행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	5년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(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)		
	○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, 편취한 경우	5년	전액 환수
	○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	2년	해당금액 환수
	○ 단순 착오,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*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,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	경고	해당금액 환수
○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,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	경고	해당금액 환수	
협약 위배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·보고한 경우	5년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 명령에 불응한 경우	2년	해당금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	1년	해당 없음
	<input type="checkbox"/> 진흥원 승인(통보)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	경고	해당금액 환수
성실 위반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	경고	해당 없음